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44
------------	-------

발의연월일 : 2018. 1. 10.

발의자 : 이은재 · 김성태 · 이종배
이진복 · 이현재 · 백승주
김선동 · 정유섭 · 김종석
곽대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사는 주로 서민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국민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기초생활 법률관계를 상담·지원해 주고, 필요에 따라 제기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위임받아 처리해 주는 생활밀착형 서민 법률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해 오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법무사의 업무 유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고, 법률상 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아 업무를 처리하는데 각 단계별로 위임절차를 수차례 반복하여야 하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 실정임.

이에 따라 해당 문제를 개선하여 국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법률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수정하고 그 업무권한을 명확히 하며(안 제2조), 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등의 내용을 더욱 확대·상세화하고(안 제24조), 그 처벌을 강화하며

(안 제73조제3항 및 제76조의2 신설), 그 동안 법무사 사무소의 내부 운영 등과 관련해 나타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무소·분사무소 설치(안 제14조 및 제40조)와 관련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1. 법원, 현법재판소, 법무부와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2. 법원, 현법재판소, 법무부와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4. 등기·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 및 등기관·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법원조직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사법보좌관이 수행하는 업무로 정하여진 각종 사건 신청의 대리
7.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송 및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 신청의 대리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9.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관이 실시하는 강제집행사건 신청의 대리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 신청 및 청구를 대리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무 또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제14조제4항 후단 중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소속된 자로서 휴업”을 “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를 “분사무소”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외의 분사무소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할구역마다 2개소 이상 둘 수 없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부당한 사건유치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제2조에 따른 업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법무사나 그 사무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법무사나 그 사무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법무사나 그 사무원은 제2조에 따른 업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를 고용하여 법무사의 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제4항 중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한 법무사로서 휴업”을 “휴업”으로 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를”을 “분사무소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외의 분사무소는 시·군·구 관할구역마다 2개소 이상 둘 수 없다.

② 분사무소에는 법무사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4조(제47조제1항 및 제47조의14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몰수·추징) 제24조(제47조제1항 및 제47조의14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p> <p>1. <u>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u></p> <p>2. <u>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u></p> <p>3. <u>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u></p> <p>4. <u>등기·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u></p> <p>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p> <p>6. <u>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u></p> <p>7. <u>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u></p>	<p>제2조(업무) ① ----- ----- -----.</p> <p>1. <u>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와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u></p> <p>2. <u>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와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u></p> <p>3. <u>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u></p> <p>4. <u>등기·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 및 등기판·공탁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代理)</u></p> <p>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p>

입찰신청의 대리

6. 「법원조직법」 제5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사법보좌관
이 수행하는 업무로 정하여진
각종 사건 신청의 대리

7. 민사비송, 상사비송, 가사비

송 및 가족관계등록비송 사건
신청의 대리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에 따른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9.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

관이 실시하는 강제집행사건
신청의 대리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

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각종 신고, 신청 및
청구를 대리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

무 또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
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
수되는 사무

<삭 제>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법무사나 그 사무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법무사나 그 사무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법무사나 그 사무원은 제2조에 따른 업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를 고용하여 법무사의 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구성원 등) ① ~ ③ (생략)

④ 법무사법인의 구성원과 구성원이 아닌 소속 법무사는 같은 지방법무사회에 가입한 법무사로서 휴업 중이거나 업무

제35조(구성원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휴업-----
-----.

정지 중인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생 략)

제40조(분사무소) 법무사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법무사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제73조(업무 범위의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 략)

3. 제24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를 한 자

4. · 5. (생 략)

<신 설>

⑤ (현행과 같음)

제40조(분사무소) ① -----
분사무소를-----.
<후단 삭제> 다만,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외의 분사무소는 시·군·구 관할구역마다 2개소 이상 둘 수 없다.

② 분사무소에는 법무사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3조(업무 범위의 위반 등) ① -----

----.

1. ·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5. (현행과 같음)

③ 제24조(제47조제1항 및 제47조의14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76조의2(몰수·추징) 제24조(제4
7조제1항 및 제47조의14제1항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를 위반한 자가 받은 금
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
다. 이를 몰수 할 수 없을 때에
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